

01

관세청 주요 이슈

관세청 YES FTA 기동대 발대식 개최

관세청은 지난 2월 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YES FTA 기동대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는 '관세청 365 수출 총력지원 체제'의 일환으로 지역 본부 세관별로 YES FTA 기동대를 운영해 영세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가 일대일 FTA 맞춤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 365 수출 총력지원 체제'는 3대 수출지원 정책을 통해 6개 본부세관이 힘을 모아 수출 5천억 불을 달성하고, 365일 수출기업에 총력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전년도에 비해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세계 교역시장의 불안정함을 강조하며, 우리 기업의 수출 지원을 올해 관세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① FTA 활용 수출 확대와 ② 전자상거래 신 수출시장 개척, ③ 해외 비관세장벽 완화

등 3대 전략으로 구성한 '관세청 365 수출 총력지원 체제'를 통하여 경제성장 동력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365 수출 총력지원 체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FTA 활용 수출 확대의 지원 체계는 6대의 상담버스(승합 차량)로 이뤄진 'YES FTA 기동대'를 운영해 FTA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중소기업에 세관직원 및 공익관세사가 직접 방문해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원산지 간편인정제도의 확대로 유자, 전복, 광어 등 농·수·축산물 1,113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인증서류를 1종으로 축소하는 등 45만 농·수·축산 농가의 FTA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는 전자상거래 신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체계이다. 정식으로 수출통관된 역직구(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통관인증마크(QR코드)를 포장박스에 붙여 수출함으로써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동남아 국가로의 수출시장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 소비자는 스마트폰으로 우리나라의 통관인증마크(QR코드)를 조회해 한국에서 정식으로 배송된 물품임을 확인하면 위조상품으로 인한 성실한 수출기업의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다.



또한 현재 인천-청도 간 노선을 운영 중인 페리선의 활용을 늘려 해상배송 체계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며 지역과 일본으로의 확대를 추진한다. 소요일은 4~5일로 비슷하지만, 비용은 항공 특송에 비해 50% 이상 저렴해 기업의 물류비용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 외에 수출신고 항목을 57개에서 26개로 대폭 간소화하고, 전자 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을 구축해 수출신고 소요시간도 2시간에서 최대 2분까지 크게 단축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마지막으로 해외 비관세장벽 완화를 통한 지원 체계이다. 품목분류 분쟁, 원산지 증명 등 관세 이외의 행정절차에 따른 애로사항 발생 시 해당국 세관과 직접 접촉해 분쟁을 해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세관이 파견되지 않은 나라에는 현장 해결팀을 파견하고, 통관애로가 많이 발생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회의 개최 시 이를 의제화 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통관애로 해소 100일 작전' 결과, 185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약 180억원의 기업비용 절감 효과를 거둔 것에 근거해 올해부터는 해외 통관애로 해소센터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통해 AEO 공인 수출업체의 수입국 내 통관 소요시간을 대폭 줄일 예정이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 非 AEO 공인기업의 통관 소요시간은 각각 45시간, 60시간가량 소요되는데, AEO 공인기업은 20시간, 34시간까지 각각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① 보호무역의 파고에 대응한 수출기업 총력지원, ②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관세행정 지원 강화, ③ 입출국자 1억명 시대에 대비한 여행자 통관체재 혁신, ④ 안정적 세수 확보를 통한 국가재정 뒷받침, ⑤ 마약·불량식품·테러물자 차단으로 국민안전 보호, ⑥ 불법무역·무역금융범죄 근절을 통한 대외경제질서 확립, ⑦ 우호적 통상환경 조성을 위한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 ⑧ 미래관세 행정 성장기반 공고화 등 8대 중점 추진과제도 소개했다.

한-중 FTA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CO-PASS) 전면시행 안내

관세청은 한-중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구축된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 “CO-PASS”를 2016년 12월 28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다. “CO-PASS”를 통하여 한중 수출입 기업들은 한-중 FTA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다.

*한-중 간 지리적 인접성 등으로 인해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화물 보다 늦게 도착하여 통관이 지체 되거나 불필요한 창고 보관료가 지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음

한-중 FTA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의 전면 시행으로 세관당국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정보를 공유하고, 해당 원산지증명서의 FTA 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상호 통보하도록 하여 양국 간 물류비용이 감소*하고 FTA 수입심사 시 원산지증명서 신고내역의 정확성을 진단 싱으로 비교·확인할 수 있게 되어 원산지 심사 부담과 검증 부담 또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에는 중국해관에서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를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이제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원산지 전자 자료로 대체된다. 다만, 해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한다.(해관총서, 2016년 제85호, 2016.12.27)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이미 수입통관 시 원본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었으나, 수입통관 후 협정 세율 적용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원본 원산지증명서를 생략하도록 하였다.(FTA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016.12.27)

주의할 것은 한-중 FTA 협정 상 원본 원산지증명서의 보관 의무는 변동이 없다. 한국의 수입통관 후 협정세율 적용 신청이나 중국의 수입통관 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전자 원산지증명서로 대체하여

FTA 활용의 편리성을 극대화한 것이지 예외적으로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수입자는 지금과 같이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음은 원산지증명서의 자료 교환여부를 수출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전자 원산지증명서 진행정보 조회 사이트이다.

관세청 YES FTA 포털에 접속하여 상단의 원산지검증 메뉴의 원산지 검증을 클릭하면 좌측에 “CO-PASS”진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YES FTA portal interface. On the left, there is a search bar with placeholder text "CO-PASS(FORES) 진행 정보". Below the search bar, there is a table with columns for "수출입자", "C/O 번호", "C/O 제출일자", and "C/O 상태". The table contains several rows of data. On the right side of the screen, there is a sidebar with various links related to FTA services, such as "FTA 소개", "FTA 통계", "FTA 활용", and "FTA 관리".

한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도 전자 원산지 정보 교환이 2017년 2월 8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해관총서, 2017년 제10호, 2017.2.4)

중국해관은 이미 확보한 원산지증명서 전자정보와 수입자의 수입 신고내용이 일치한 경우,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2017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 실시

관세청은 우리 중소기업이 FTA 활용을 통한 성장동력 발굴 및 가격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을 1월 23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금번 사업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컨설팅 지원금이 전액 또는 최대 60%까지 지원되며, 컨설팅의 내용은 'FTA 활용 종합 컨설팅'(A형), '사후검증 대응 맞춤형 컨설팅'(B형), '시스템 활용 컨설팅'(C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A형은 단계별 지원 컨설팅으로, 1단계에서는 각 기업의 전산·회계 환경에 적합하도록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구축하고, FTA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및 인증수출자 및 원산지 사전진단 컨설팅을 실시하며, 2단계에서는 1단계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일정기간 원산지관리 및 기업의 FTA 활용 자립을 지원하게 된다.

● A형 1단계 컨설팅 내용

지원구분	주요 내용
FTA-PASS 구축 ·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FTA-PASS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입력등록 품목별 FTA 특혜세율 등 실익분석 재료명세서 작성, 기초 데이터 생성 및 입력 (구매처, 물품재료, 거래명세서, 원가관리, 완제품 가격 등) 원재료 및 생산품의 HS 품목분류, 제조공정 확인 원재료 변경 시 조정방법 등 FTA-PASS 원산지관리 전반 FTA-PASS를 활용한 원산지 판정, 서류발급, 증빙자료 관리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설명, 신청절차 및 발급 원산지확인서 발급자료 입력, 송수신 및 발급
인증수출자 지정 ·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수출자 요건, 절차, 신청, 갱신 및 사후관리 수출물품의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운송요건 충족여부 C/O 관리대장, 전담자 지정 등 관리실태 진단
원산지 사전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검증절차, 특혜관세 배제에 대한 이해 수출물품별 자료보관 실태 및 검증대응 체계 구축 사전진단 자율점검 리스트 작성 및 종합 사전진단 실시



B형은 사후검증 대응 맞춤형 컨설팅으로, FTA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 중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하여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통한 사전진단 자율점검표 작성, 「CBP Form 28」 및 표준질의서 회신 작성법, 기록 보관관리 및 검증대응 절차 등의 컨설팅을 지원한다.

● B형 사후검증 컨설팅 내용

지원구분	주요 내용
원산지 검증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정별 검증절차 및 제도 교육 • 해당 기업 수출물품 및 유사업종 원산지 검증 사례 안내 • 모의질의서(CBP 28 Form 또는 표준질의서) 작성
원산지 사전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검증 사전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보관 리스트, 자료별 보관방식 안내 – FTA-PASS 내 ‘검증대응 자료관리’ 활용

C형은 시스템 활용 컨설팅으로, FTA 전담 인력이 부족한 영세기업 중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를 통한 전산관리가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FTA-PASS 기준·거래정보 입력 및 이를 활용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서 유통 등의 컨설팅을 지원한다.

● C형 시스템 컨설팅 내용

지원구분	주요 내용
품목분류, FTA-PASS 구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재료 및 생산품의 HS 품목분류, 제조공정 확인 • FTA-PASS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입력등록 • 품목별 FTA 특혜세율 등 실익분석 • 재료명세서 작성, 기초 데이터 생성 및 입력 • 제조과정 변경 시 조정방법 등 FTA-PASS 활용방식 전반 • FTA-PASS를 활용한 원산지 판정, 서류발급, 증빙자료 관리

지원대상은 FTA 미활용 기업이거나 매출 2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 또는 사후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되며, 수출·제조기업 및 수출기업에 원재료·완제품 공급(예정) 중소·중견기업도 지원된다.

지원한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전액지원 또는 최대 60%까지 지원된다.

구 분	적용기준	기업부담	비고
I 기업군	전년 매출액 20억 이하	전액 지원	
II 기업군	전년 매출액 50억 이하	지원금액의 10%	I 기업군 제외
III 기업군	전년 매출액 500억 이하	지원금액의 20%	I, II 기업군 제외
IV 기업군	전년 매출액 1,500억 이하	지원금액의 30%	I, II, III 기업군 제외
V 기업군	전년 매출액 1,500억 초과	지원금액의 40%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월 상호 출자 제한기업으로 고시하는 기업 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다만, 직전 2년간(2015~2016) 관세청·증기청·산업부 및 지자체의 FTA 분야 예산지원 컨설팅 수혜기업이거나 상호출자 제한 기업*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른 세부사항은 각 사업세관별(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평택 등 6개 세관) 홈페이지 사업 공고를 참고하면 되고, 각 세관별로 개최 예정인 사업관련 설명회 등을 통해서도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인력·자금·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어려운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YES FTA 컨설팅' 사업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 지역별 'YES FTA 컨설팅 사업'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주 소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71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8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51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631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81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광주본부세관	통관지원과	062-975-8051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길 43
평택직할세관	통관지원과	031-8054-7041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45

신청기간은 1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나 선착순으로 접수·마감하며, 본 사업 예산의 소진 시 조기 마감한다.



※ 신청기간 내 사업세관에 온라인(<http://ita.customs.go.kr>)으로 접수 또는 방문(우편)신청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개선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FTA-PASS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원산지확인서'에 대한 세관상 사전확인 신청,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청·자율점검, 원산지 검증 대비 자료관리 기능 등을 추가한 것이다.

관세청, '2017 중국관세율 일람표' 제공

관세청은 對중국 수출기업이 중국에서 적용 가능한 세율을 비교하고 유리한 관세율을 적용·활용할 수 있도록 '2017 중국관세율 일람표'를 제작하고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하는 2017 중국 HS 일람표는 WCO HS협약 제6차 개정과 2017년 잠정세율 적용품목 변경, ITA 관세율 추가 인하(2017. 7월)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다.

* ITA(정보기술협정) 세율은 WTO 주도로 정보통신제품의 무역 원활화를 위해 관세를 낮추기 위한 협정으로 지난 1997년 ITA I이 발효된 이후 2016 ITA II가 발효된 바 있다.

일람표는 HS번호, 품명, 세율(MFN, APTA, ITA*, 잠정세율, FTA)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세청 YES-FTA포털(<http://fta.customs.go.kr>)에 등재되어 있다.

인천본부세관 한·미 FTA 발효 5주년 특별 세미나 개최

한·미 FTA 운영 동향과 장애요인, 원산지 검증 사례 등 발표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3월 15일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후원으로 한·미 FTA 발효 5주년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한·미 FTA의 안정적 활용제고'를 주제로 인천·경기 지역 관내 수출입기업들에게 한·미 FTA의 안정적 활용을 통한 수출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인천·경기 지역 수출업체 임직원, 관세사 및 세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하여 큰 관심을 보였다.

이번 세미나는 한·미 양국의 현직 FTA 전문가 3명이 “미국의 최근 주요 통상정책과 美 세관의 한·미 FTA 운영 동향”, “한·미 FTA 장애요인 대응 방안”, “한·미 FTA 원산지 검증 사례 연구 및 시사점” 등 3개 주제를 발표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연사인 미국 관세청(CBP) FTA 담당관을 역임한 카트리나 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미국 신행정부의 주요 무역통상정책과 지난해 2월 발효된 무역촉진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美 관세청의 한·미 FTA 주요 운영동향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인천본부세관의 김석오 FTA활용지원단장은 한·미 FTA 발효 후 지난 5년간 한·미 FTA 이행과정에서 제기된 미국의 까다로운 원산지검증과 식품안전, 소비자보호 및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강화하고 있는 반덤핑방시관세 등 한·미 FTA 활용 장애요인과 한국 수출상품의 통관거부사례를 분석하고 對미 수출기업들의 효과적인 한·미 FTA 활용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연사로 나선 인천본부세관의 한·미 FTA 원산지검증업무 담당 최형균 자유무역 협정3과장은 실제 업무를 하면서 발생한 미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절차와 한국 섬유제품에 대한 원산지 방문조사 사례를 소개하고 원산지검증 피해 예방요령을 제시하였다.

관세청, 전국 세관에 공익관세사 101명 배치

관세청은 지난 2월 13일 영세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해 전국 34개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 부서에 공익관세사를 배치하여 FTA 활용 사각지대 현장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익관세사는 한국관세사회 소속 관세사 중 신청·추천을 받아 관할세관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서울·부산·인천 등 지역 별로 배치된 101명의 공익관세사는 세관직원과 함께 주 1~2회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부서에 상주근무하거나 기업 현장방문 또는 사전예약 상담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6개 지역에 거점별로 운영 중인 이동상담센터인 YES FTA 기동대를 지원해 세관직원과 함께 FTA 활용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중소업체를 직접 방문 및 1:1 맞춤형 상담 제공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예정이다.

공익관세사는 FTA 관련 1차 상담(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특혜관세율),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상담, 교육·설명회 시 강사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관세화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서도 상담해 준다.

출처 : 이뉴스투데이



관세청, FTA 주력산업 원산지검증 지원

관세청은 FTA 주력산업 수출물품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전국 주요 6개 본부세관에서 3월 7일부터 4월 3일까지 약 한달여간 설명회·모의검증 등을 실시하여 원산지검증 대응전략 제시 및 관련 내용의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 자동차, 섬유류, 기계부품 산업 우선실시, 참여 희망기업은 수출입기업지원 센터에 문의

관세청,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C/O) 발급 기준 안내

관세청은 HS 2017 개정시행과 관련하여 한-중 FTA 관세위원회에서 논의 결과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을 마련하고 안내하였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9번란은 HS 2017에 따른 품목번호를 기재하고, 10번란(원산지기준)은 HS 2012에 기초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발급하기로 하였다.

02

우리나라 FTA 동향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제4라운드 타결

*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몽골(가입 절차 진행 중)

APTA 제4라운드 협상이 지난 1월 13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APTA 제4차 각료회의에서 협상 개시 9년 만에 최종 타결되었다. 향후 회원국*의 국내 비준절차를 거쳐 협정 발효 시 총 품목수의 약 29%에 대해 평균 관세율이 종전보다 33% 인하된다. 특히, 중국은 2,191개 품목에 대하여 평균 관세율이 33.1% 인하되고 인도는 3,142개 품목에 대하여 평균 관세율이 33.4% 인하된다.

한편, 원산지결정기준도 기존 부가가치기준 이외에 철강 등 HS 4단위 156개 품목에 대하여 세번변경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해졌다.

* 결합기준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동시에 충족(CTSH + RVC 35%)

이번 타결로 對중국 수출 기업은 석유 제품, 플라스틱 제품, 편직물, 건전지 등 약 1,200여개 품목이 한-중 FTA 보다 세율이 낮아져 유리한 세율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한-인도 CEPA의 엄격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對인도 수출기업은 원산지 기준 충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APTA 활용이 가능해졌다.

030

이번에 타결된 제4차 APTA 협상(안)에 대하여 각 회원국은 국회비준절차를 획득하여야 하고, 법적 효력이 부여된 비준서를 ESCAP 사무총장에게 기탁하여야 효력이 발생된다. (2017. 7. 1 발효 목표로 국내절차 진행 예정이다.)

●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APTA) 개요

- **(목적)** 아시아태평양 개도국 간 무역자유화 및 교역 확대를 통한 회원국의 경제발전과 국민생활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결
※ 1975년 방콕 협정(Bangkok Agreement)체결, 2006년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으로 명칭 변경
- **(회원국)** 우리나라, 중국, 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방글라데시, 몽골(가입진행 중)
- **(주요내용)** 회원국간 상품 관세인하 협정으로 시작하여 2009년부터 서비스, 투자, 무역원활화 협정으로 확대 진행 중
- **(주요경과)** 협정 발효(76) 이래 3차례 상품 관세 추가자유화를 진행하였으며, 2007년부터 제4라운드 협상(관세, 원산지 분야)을 시작하여 2016. 9월(제49차 상임위)에 다결 합의

【APTA 주요 경과】

- 1975. 7. 31 : 방콕협정 채택
- 1976. 6. 17 : 방콕협정 발효(제1라운드 시행)
- 1984.~1990. : 제2라운드 협상 및 시행
- 2001. 10.~2005. 11. : 제3라운드 협상, 중국가입
(2002. 1. 1 가입 발효)
- 2006. 9. 1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으로 명칭 변경 및 제3라운드 발효
- 2007. 10. 26 : 제2차 각료회의(서울), 제4라운드 협상 개시
- 2009. 12. 15 : 제3차 각료회의, 몽고 가입신청서 제출
- 2017. 1. 13 : 제4차 각료회의(제4라운드 타결)

● 한-APTA 회원국 교역실적

한국의 对APTA 회원국 수출실적

(단위 : 백만 불, %)

*수출순위는 2015년 기준

국가 (수출순위*)	2014년			2015년		
	금액	APTA내 비중	세계 비중	금액	APTA내 비중	세계 비중
중국(1위)	145,288	90.74	25.37	137,124	90.78	26.03
인도(7위)	12,782	7.98	2.23	12,030	7.96	2.28
방글라데시(50위)	1,236	0.77	0.77	1,209	0.80	0.23
스리랑카(83위)	314	0.20	0.05	278	0.18	0.05
몽골(90위)	347	0.22	0.06	246	0.16	0.05
라오스(104위)	156	0.10	0.03	170	0.11	0.03
대APTA 총계	160,123	100	28.0	15,1057	100	28.7
대세계 총계	572,666			526,757		

한국의 对APTA 회원국 수입실적

(단위 : 백만 불, %)

*수입순위는 2015년 기준

국가 (수출순위*)	2014년			2015년		
	금액	APTA내 비중	세계 비중	금액	APTA내 비중	세계 비중
중국(1위)	90,082	93.99	17.14	90,250	95.02	20.68
인도(23위)	5,275	5.50	1.00	4,241	4.46	0.97
방글라데시(62위)	345	0.36	0.07	335	0.35	0.08
스리랑카(89위)	94	0.10	0.02	84	0.09	0.02
몽골(106위)	24	0.03	0.005	46	0.05	0.011
라오스(113위)	18	0.02	0.003	28	0.03	0.006
대APTA 총계	95,838	100	18.2	94,984	100	21.8
대세계 총계	525,515			436,499		

출처 : 관세청 주간 FTA 동향

제1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분과별 위원회 개최

한-중 양국은 지난 1월 9일부터 5일간 베이징에서 한-중 FTA 이행 점검을 위해 한-중 공동 위원회 및 분과별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논의된 주요 의제는 원산지증명서 항목수를 20개에서 50개 또는 양측이 합의한 수로 개정하는 것과 인증수출자 제도의 연내 도입을 위한 것이었다.

기타 의제로 협정의 이행상황 점검과 화장품 등 통상현안 및 전기차 배터리 등 투자기업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제4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

한-미 양국은 지난 1월 12일 서울에서 제4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논의된 주요 의제로 미국 측은 우리 측의 원산지검증이 과도하다는 문제를 제기했으나, 우리 측은 협정에 따른 최소 수준의 원산지 검증을 수행하고 있음을 미국 측에 설명하며 향후 상호 조화 및 발전 방안 논의를 제안하였다.

기타 의제로 우리 측은 철강 분야에서 미국의 수입규제 강화에 따른 우려를 전달하였다.

한-메르코수르*(MERCOSUR) FTA 협상 상반기 개시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난 1월 17일부터 3일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47차 세계경제포럼 연차 총회에서 중남미 장관들과 회동을 통해 한-메르코수르 FTA를 상반기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중국의 과도한 무역장벽 이의제기 할 것”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지난 1월 17일 열린 제4차 한-중 통상점검 TF회의에서 중국과의 통상현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부분은 지속해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현지기업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중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한-멕시코 FTA 체결 본격 협상 준비

정부는 지난 2월 7일 한-멕시코 통상 관련 차관급 예비협의에서 미국의 NAFTA 재협상 정책에 따라 미국시장을 겨냥해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업체들의 피해 우려를 전달하였다. 본 협의에서는 NAFTA 재협상 등이 멕시코 진출 우리 기업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멕시코 정부의 관심을 당부하였고, 금번 협의를 통해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재개되었으므로 멕시코와의 FTA 체결에 속도를 내기로 하였다.

정부, 개별 국가·경제권과 FTA 신시장 창출에 역량 집중

정부는 제190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2017년도 대외정책방향을 확정하면서 멕시코 및 영국과 개별 FTA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남미공동시장(MERCOSUR),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도 신규 FTA를 추진하며 일본과는 개별 FTA 보다는 한·중·일 FTA형태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한-미 FTA는 유지, 한국형 규제는 철폐”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지난 2월 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를 지키기 위해 한-미 FTA 혜택을 미국에 전달할 것이고 양국 간 관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충실한 조약 이행이 필요하며 환경규제와 자동차 수입 규제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해양수산부, 한-뉴질랜드 FTA 수산협력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어학연수, 산학연계 훈련, 전문가 훈련과정, 수산분야 대학원 과정 지원

해양수산부는 한-뉴질랜드 FTA에 대응하여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3월부터 어촌 지역의 청소년·수산분야 전공자 등을 대상으로 양국 공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한-중미 6개국 FTA, 법률 검토회의 개최

* (중미 6개국)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カラ과, 파나마

지난 2월 13일부터 5일간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 FTA 법률 검토회의에서는 FTA 협상 실질타결 선언(2016.11.16) 이후 금년 상반기 내 정식서명을 목표로 법률검토, 국문번역, 가서명 등 후속절차 등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한-인도 CEPA 2차 개선협상 개최

정부는 지난 2월 13일부터 뉴델리에서 양일간 열린 한-인도 CEPA 2차 협상에서 지난 1차 논의(2016.10)를 토대로, 상품 양허 및 품목별 원산지기준 개선, 서비스 추가 자유화 관련 시장접근 협상 등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산업부, 제7차 한–중 통상점검 T/F 회의 개최

산업부는 지난 2월 17일 한–중 통상점검 관계부처·민간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對중국 수출 애로사항 점검 및 한중 산업장관 회의, 산업협력 활성화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한–영 FTA 무역작업반 1차 회의 개최

- * 양국 통상관계 관련 ① 브렉시트 이후에도 공백없이(without interruption) 유지되고, ② 영국의 EU 탈퇴 후 최소한 한–EU FTA 수준 이상으로 정립한다는 원칙

한–영 FTA 무역작업반은 지난 2월 24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한–영 경제통상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원칙*을 기초로, 브렉시트 이후에도 기존의 한–EU FTA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관세사회, 중기중앙회와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관세 외에 법률, 세무, 회계, 노무, 지식재산 등 컨설팅/애로상담 (1666-9976)

한국관세사회는 지난 2월 22일 최근 FTA 확대 등의 영향으로 수출입관련 애로 증가에 따라 중기중앙회와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경영지원단* 활동 관세사를 선정하여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RCEP 제17차 공식 협상 개최

* 상품 분야 최종 공통양허 목표 및 후속 양허안 관련 사항을 집중 논의하고, 상품·전자상거래·원산지·통관 및 무역원활화 등 12개 분야 협정문 협상

정부는 지난 2월 27일부터 8일간 일본에서 열린 RCEP 제17차 공식 협상을 통해, 최근 보호무역 움직임 강화 등에 따른 RCEP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상품·서비스 투자 시장접근 협상*을 가속화하고 RCEP를 조기 타결을 위한 진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을 올 상반기 시작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대외협상 미참여) 5개국이며, 무역협정(TA)은 FTA와 비슷한 개념으로 메르코수르가 FTA라는 용어를 기피해 대신 사용

산업부 주형환 장관은 지난 3월 2일 아르헨티나에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개시를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올해 상반기 국내 절차를 거쳐 협상을 시작할 계획을 밝혔다.

산업부·중기청, 전국에서 비관세장벽 합동 설명회 개최

산업부와 중기청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보호주의 대응 강화를 위해 무역기술장벽 동향과 대응전략 및 해외 인증교육,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순회 합동 설명회를 지난 2월 27일부터 4일간 개최하였다.

인천시, 중국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한·중 FTA 활용교육 실시

* 지난해 11월 중국 웨이하이시에 설립하여 인천시 홍보 및 무역·투자 상담 등 수행

인천시는 인천세관과 협동으로 지난 2월 28일 주중 인천경제무역 대표처(IFEZ)* 전시입점업체를 대상으로 대중국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중 FTA 활용 교육을 실시하였다.

무역협회, 對중국 무역애로 신고센터 설치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3월 8일 중국의 전방위 경제 제재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대중국 무역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특별상황반을 가동하여 치이니디스크 전문가의 실시간 상담·방문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와 트레이트 콜센터(1380)를 통해 접수

한-중미 FTA 가서명, 성장 가능성 큰 중미시장 선점

*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 과테말라는 추후가입 계획

우리나라와 중미 5개국*이 지난 3월 10일 코스타리카에서 FTA 가서명을 함에 따라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중미국가와 FTA를 체결해 중미시장에서 중국·일본보다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였다.

03

해외 FTA 관련 동향

캐나다-중국 FTA, 2월 협상 시작

캐나다는 중국과의 FTA 협상을 이르면 2월 중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그간 인권 문제 갈등으로 협상에 신선이 없다가 지난 해 9월 리커창 총리의 캐나다 방문으로 양국 관계가 개선되면서 협상을 개시를 결정한 것이다.

영국, '하드 브렉시트' 선언

영국 메이 총리는 지난 1월 17일 브렉시트에 관한 정부의 계획을 공개하며 EU 단일 시장과 관세동맹에서 모두 탈퇴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선언하였다. 한편, 메이 총리는 한국, 미국, 중국 등 세계 각국들과 양자간 FTA를 체결할 것임을 밝혔다.

미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공식 선언

백악관은 지난 1월 23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행정명령으로 TPP 탈퇴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미 대선에서 보호무역을 주장하였으며 이번 탈퇴 선언으로 미국은 TPP 대신 개별 국가들과 새로운 무역 협상을 나설 계획임을 언급하였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 또한 TPP 탈퇴를 공식 통보하였다. 미국 USTR은 지난 1월 31일 TPP 사무국을 맡은 뉴질랜드에 탈퇴 공식 서한을 송부하였으며, 서한에는 “서명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지 않겠다”고 명기하여 비준절차 포기를 공식 선언, 복귀가능성을 부정하였다.

트럼프 대통령,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할 것”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NAFTA 재협상을 위해 캐나다, 멕시코와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백악관은 상무 장관에게 무역협정 위반사례를 전부 찾아 이를 시정하는데 모든 수단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릴 것이라 언급하였다.

베트남·뉴질랜드와 FTA 발효 후 수출 증가

관세청은 지난 해 12월 20일에 발효된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발효 1년간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對베트남 수출액은 15.2%, 對뉴질랜드 수출액은 6.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7% 감소한 것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된다.

유럽의회, EU-캐나다 CETA 비준 동의

* 협상 8년만 2017년 4월 잠정발효, 완전 발효는 전체 EU 회원국 의회·지방의회 비준 필요

유럽의회는 트럼프 보호무역에 맞서 캐나다와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을 승인하였다. CETA 완전 발효^{*}시 무역규모가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대응, EU-아시아 협력 강화

EU는 트럼프 무역정책에 대응해 'Pivot to Asia'를 표방하며 12개 TPP 협상국 중 10개 국가와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일본과의 FTA 협상도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역시 EU와 상호투자협정 협상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베트남도 EU를 비롯하여 인도, 파키스탄, 호주, 뉴질랜드 등과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관세청 주간 FTA 동향, 이코노미스트

인도 등 신흥시장의 보호무역 장벽에 대비 필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인도의 제조업 육성 정책 관련 무역기술장벽(TBT)과 식물위생검역조치(SPS) 등 對인도 수출에서 비관세장벽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한-인도 CEPA 개선협상 등에서 TBT와 SPS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출처 : 관세청 주간 FTA 동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 유라시안경제연합(EEU)과의 FTA 체결 가속화

* 유라시안경제연합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 아르메니아, 키르기즈스탄 등 5개국이며, 이들 국가와 인도의 무역량은 약 100억 달러 수준

인도 당국은 유라시안경제연합*과의 FTA 협상 합의 가속화에 따라 금년 중 FTA가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난 3월 1일 발표하였다.

출처 : 관세청 주간 FTA 동향, 힌두비즈니스라인

EU-뉴질랜드 FTA 본협상 착수 합의

EU와 뉴질랜드 당국은 지난 3월 8일 2015년부터 약 2년간 진행해온 FTA 사전협의를 마무리 짓기로 합의하고, 올해 안에 본격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U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기회로 삼아, 아시아 · 중동 · 남미국가와도 협력을 확대 중이다.

페루-인도 무역협정 기술협상 개시

페루 · 인도 당국은 지난 3월 7일부터 양일간 인도에서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본 협상에 앞서, 기술협상을 개최하여 관세 양허, 서비스 · 투자 분야 개방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지난해 10월 FTA 공동연구에 대한 후속조치로 금번 기술협상을 개시하였다.